

우정사업본부/ 원가 배부기준 검토 및 개선 연구 최종보고

2018년 9월

Contents

I. 프로젝트 개요

II. 표준활동량 개선방안

III. 기타전출입금 개선방안

본 용역은 원가배부기준 개선을 통해 우편, 예금, 보험 간 합리적인 분담금 배부기준을 마련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업의 배경(Back-ground)

분담비율 산정 기준의 객관성 부족

- 우체국 국장 등 공통사업 근무자의 활동량에 대한 합리적 근거 마련
- 창구근무자에 대한 사업별 분담비율 재산정 요구

현 분담금액 및 분담기준의 적정성 검토

- 현행 분담금액의 적정성 검토
-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은 배부기준 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 요구

공통자산에 대한 합리적 분담금 산정 요구

- 건물, 토지 사용료 분담 기준에 대한 적정성 확보 요구
- 공통자산에 대한 합리적 개선 요구

우정사업본부
원가배부기준
검토 및 개선

과업의 범위(Scope)

1

합리적인
활동량의
산출방안 마련

- 국장, 지원과, 6급 이하 관서 차석 등 공통사업 근무자 사업별 분담비율 재산정
- 창구 근무자 등 금융사업 근무자 사업별 분담비율 재산정

2

기존 회계 간
분담 방식과
금액 타당성
검토

- 현 배부기준 보다 합리성과 설득력이 높은 배부기준 합리성 검토
- 현 배부기준보다 합리성과 설득력이 높은 대체 배부기준 개발 및 관리방안 검토
- 회계 간 분담 금액 적정성 검토
- 기존 배부기준 통계 정확성 검토

3

물품 및
국유재산
회계처리 및
회계간 분담
적정성

- 리스회계처리 검토
- 금융리스 이자비용, 운용리스비용 회계처리 검토 및 배부금액 적정성 검토
- 공통자산 분담 적정성 검토
- 기존 배부기준 및 분담비율 검토 및 신규 기준에 따른 재무적 영향 검토

4

기타 전출입금
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
검토

- 보험취급수수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6조의 대출 세부기준 검토
- 신설된 배부기준의 전산화 관리방안 검토
- 기회비용 및 회피가능원가 개념의 전출입금 검토

총 5개월의 용역기간 동안 표준활동량 산출방안, 공통자산의 분담기준 개선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단계별 수행업무		1M				2M				3M				4M				사후 지원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16주	
Task 1	기존 회계 간 분담방식 및 금액 타당성 검토	현행 회계 간 분담기준 등 현황 검토				기존 회계 간 배부기준 합리성 검토				회계 간 분담 금액 적정성 검토								
Task 2	합리적인 활동량 산출방안 마련			금융, 마케팅 및 창구 근무자 등 사업별 분담비율 재산정				우체국 국장 및 공통사업 근무자 사업별 분담비율 재산정										
Task 3	물품 및 국유재산 회계처리 및 분담 적정성 검토			리스 회계처리 검토 후 합리적 배분방안 마련				공통자산 분담 및 적정성 검토										
Task 4	기타 전출입금 관리 방안 검토 등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출입금 변동 분석										
									우체국보험 대출 세부기준 검토									
									신설된 배부기준의 전산화 관리방안 마련									
주요보고일정		★ 착수보고								중간보고 ★				최종보고 ★				

Contents

I. 프로젝트 개요

II. 표준활동량 개선방안

III. 기타전출입금 개선방안

업무처리시간에 따른 창구근무자 표준활동량 산출과 국과장 및 경영지도실장, 공통근무자의 표준활동량 산출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체국 표준활동량 개선방안



창구근무자의 표준활동량은 가상환경에서 측정한 업무별 표준시간과 업무별 실적을 토대로 산출된 사업별 소요시간 비율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금융창구근무자 표준활동량 산출방안

업무별 건당 소요시간 측정

1 가상의 환경에서 창구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별 건당 평균소요시간 측정

2 의무설명시간(계약, 약관 등) 및 의무증빙 검토시간을 추가로 반영하여 업무별 건당 총 소요시간 산출

- 거래 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의 안내/설명 및 필수증빙검토에 따른 소요시간은 가상 측정 시 제외되어 우체국 현업담당자 인터뷰 결과에 근거하여 추가로 반영함

가상측정
시간

+

의무설명
(안내)시간

+

필수증빙
검토시간

=

업무별 건당
총 소요시간

업무구분	가상측정	의무설명	증빙검토	합계(초)
가입	328	135	119	582
담보대출약정해제	74	109	83	166
질권설정	435	176	167	778
사고보험금지급처리	184	428	330	941
증서별 보험료 납입	423	-	-	423
생존금부금지급대상건조회/지급	261	-	-	261
...	...	...	...	...

업무별 총 소요시간 및 표준활동량 산출

3 업무별 건당 총 소요시간과 거래건수를 기준으로 업무별 총 소요시간 산출

업무별
건당 총 소요시간

×

거래건수

=

업무별
총 소요시간

4 사업별로 합산하여 사업별 총 소요시간 및 활동량 산출

구분	예금사업	보험사업	합계
소요시간	XXX초	XXX초	XXX초
활동량	XX%	XX%	100%

5 설문결과에 따른 사업별 마케팅활동량을 반영하여 금융창구근무자 표준활동량을 산출

설문문항		결과		사업	표준활동량	세부활동	활동량
마케팅 비중		34.3%		예금	64%	예금상품관리	44.8%
예/보 비중		예금 51.0%				우편환 관리	7.8%
						우편대체 관리	2.9%
						금융수탁상품 관리	7.8%
						당좌대월 관리	1.0%
보험		49.0 %		보험	36%	보험사업공통	35.7%
합계					100.0%		

전체 금융창구근무자를 대상으로 활동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대면 업무 등의 증가로 예금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창구근무자 표준활동량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개요

- 설문기간: 2018.07.23 (월) – 2018.07.27 (금)
- 설문대상자: 우체국 금융창구근무자 3,905명
- 설문응답자/응답율: 3,799명 / 97.3%

- 금융창구에서 수행하는 **마케팅활동 비중은 평균 34.3%**라고 응답함
- 전체 금융창구업무의 비중은 예금 63%, 보험 37%로 집계되었으며 마케팅 활동의 예금 및 보험사업의 비중은 각각 51%, 49%로 집계됨
- 금융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업무량 감소의 효과는 예금사업이 보험사업보다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체

4급국 (총괄국)

5급국 (총괄국)

5급국 (관내국)

6급국 (이하)

별정국

Q1

마케팅 활동량

전체 금융창구업무 중 예금상품 및 보험상품의 안내, 홍보 및 가입권유 등의 마케팅 활동 비율

34.3%

34.7%

30.3%

37.4%

34.4%

34.4%

Q2

예금/보험 마케팅 활동량

전체 마케팅 활동 중 예금사업 및 보험사업의 활동 비율

예금사업

51%

56%

54%

45%

49%

53%

보험사업

49%

44%

46%

55%

51%

47%

Q3

예금/보험 활동량

전체 금융창구업무(마케팅 제외) 중 예금사업 및 보험사업의 활동 비율

예금사업

63%

58%

61%

69%

63%

66%

보험사업

37%

42%

39%

41%

37%

34%

Q4

예금/보험 업무량

스마트금융의 도입, FC실의 역할 증대 등 금융사업 환경변화로 인한 업무량 감소효과가 큰 사업

예금사업

2,933명

310명

203명

98명

1,766명

555명

보험사업

860명

116명

56명

27명

476명

185명

최근 3년간(2015년~ 2017년)의 누적 거래건수, 마케팅 비율 34%을 기준으로 금융창구 근무자의 예금 및 보험사업 표준활동량을 산출한 결과 각각 64%, 36%로 도출되었습니다.

금융창구 근무자 표준활동량 산출결과

(1) 업무별 표준소요시간 측정

구분	거래명	거래코드	건당 표준 소요시간(초)				거래건수(건)			총 소요시간(초)			
			측정시간	의무설명	증빙검토	표준시간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예금	가입	150100	327.89	135.00	119.00	581.89	6,721,046	6,131,108	5,805,259	3,910,909,457	3,567,630,434	3,378,022,160	10,856,562,051
예금	해약	150300	177.48	-	-	177.48	5,061,541	4,527,156	4,412,528	898,296,989	803,457,011	783,113,407	2,484,867,407
예금	통장재발급	165200	204.48	-	-	204.48	2,958,330	2,920,735	3,439,473	604,904,527	597,217,289	703,286,242	1,905,408,058
													
예금 합계							52,632,990	49,056,219	46,670,021	9,310,930,648	8,509,660,409	8,143,761,181	25,964,352,238
보험	사고보험금지급처리	761900	183.65	427.50	330.00	941.15	229,940	270,194	256,340	216,408,031	254,293,083	241,254,391	711,955,505
보험	증서별보험료납입	730000	94.29	-	-	94.29	2,246,582	1,967,294	1,813,500	211,818,984	185,486,315	170,985,848	568,291,147
보험	개별청약입금처리	711700	555.28	1,237.50	531.43	2,324.21	386,392	388,257	244,351	898,055,598	902,390,247	567,922,689	2,368,368,534
													
보험 합계							8,325,017	7,593,653	6,666,015	3,888,260,247	3,753,827,764	2,866,563,652	10,508,651,663

※ 전체 거래건수와 총 소요시간은 감소 추세이나 표준활동량은 예금과 보험의 총 소요시간 간의 비율로 산출

(2) 사업별 총 소요시간 및 활동량 산출

구분	2015년 ~ 2017년 누적 소요시간		
	예금사업	보험사업	합계
소요시간(초)	25,964,352,239초	10,508,651,663초	36,473,003,901초
활동량	71%	29%	100%

(3) 마케팅활동량을 반영한 금융창구 근무자 표준활동량 산출

구분	설문결과에 따른 마케팅활동량 반영 후 표준활동량		
	예금사업	보험사업	합계
마케팅활동량	17%	17%	34%
표준활동량	64%	3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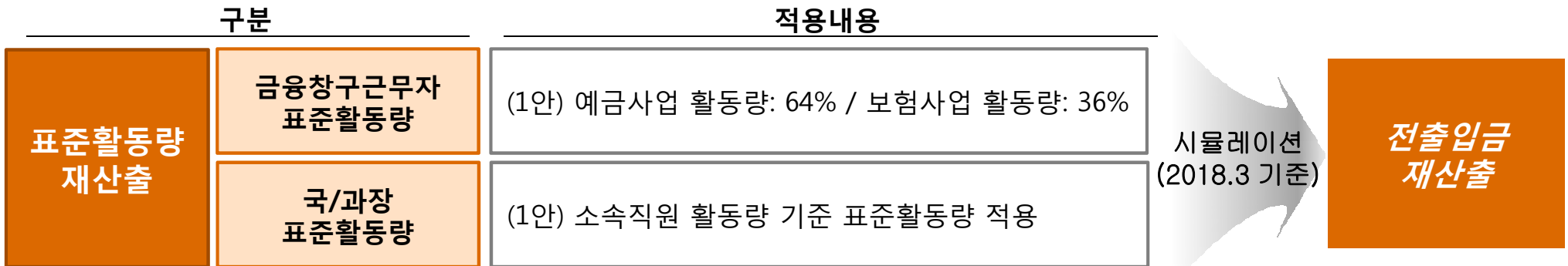
※ 연간 업무별 거래건수의 변동폭이 큰 경우 전출입금의 변동폭이 과대하게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3년간 누적 거래건수를 활용하여 표준활동량을 산출함

전출입금 시뮬레이션 계획

금융창구근무자 및 국과장 표준활동량 개선안 및 공통자산 배부기준, 시설사용료, 보험 취급수수료 등 기타 전출입금 개선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출입금 변동 예상액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전출입금 산출개요

개요	표준활동량 및 기타 전출입금 개선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출입금 변동 예상액 산출
적용내용	- 표준활동량(금융창구근무자 및 국/과장) 개선안이 반영된 2018년 3월 우정사업본부 전직원 활동량 data 활용 - 공통자산 배부기준 개선, 시설사용료 산출방안 개선, 보험취급수수료 적용 확대 등 기타 전출입금 개선안 적용



우,예,보 활동량 변화에 따른 기타전출입금 재계산

기타 전출입금 개선	공통자산 배부기준	해당 자산의 취득 총괄국(자국분) 또는 관내국 활동량 기준 적용
	시설사용료	(1) FC실 시설사용요율 5% 적용 (2) 기타시설 시설사용요율 단계적 상향(2.5% 이상) (3) 83년 7월 이전 취득 토지 보특 시설사용료 부과
	보험취급수수료	우편/예금 100%가 아닌 인원에 대하여 보험취급수수료 부과 대상으로 범위 확대

국과장 및 경영지도실장의 표준활동량 산출방안으로 소속직원의 활동량 기준, 설문결과 기준, 소속직원 및 사업별 동일 활동량 복합 기준의 3가지 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국과장 표준활동량 산출방안

삼일 추천안			
	1안 소속직원 활동량 기준 표준활동량	2안 설문결과 기준 표준활동량	3안 소속직원 및 사업별 동일 활동량 기준 표준활동량
개요	소속직원의 사업별 활동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내국장 및 영업과장, 경영지도실장 및 지원과장, 총괄국장의 표준활동량을 산출함	- 국장, 과장, 경영지도실장을 대상으로 수행한 활동량 설문결과에 따라 활동량을 산출함 - 기준과 동일한 방식임	소속직원의 사업별 활동량에 따라 산출된 공통근무인원 활동량과 우편, 예금, 보험사업에 각각 0.33의 동일한 활동량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함
장점	- 실제 소속직원의 활동량이 반영됨에 따라 객관적 근거가 명확함 -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별 업무량 변화에 대응가능함	- 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시 혼선이 없음 - 표준입력대상자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별 활동량이 반영됨	실제 소속직원 활동량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기준으로 하나 특정 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공통근무인원의 업무적 특성을 반영함
단점	- 산출방식이 복잡함 - 관서별 인원구성에 따라 산출된 표준활동량의 차등폭이 큼 2~3인 관서의 경우 활동량이 왜곡될 수 있어 명확한 입력기준이 요구됨	- 설문결과의 편차가 지나치게 큰 경우 평균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산출된 활동량이 왜곡될 수 있음 - 경영환경변화에 수시로 대응하기 어려움	- 산출방식이 복잡함 2가지 산출방식을 복합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각 산출방식의 반영 비율에 대한 객관성 부족

1안은 소속직원의 우/예/보 활동량 비율에 따라 표준활동량을 산출하는 방안으로 1단계로 관서별 소속직원 활동량 및 마케팅 활동량을 반영하여 관내국장 및 영업과장 활동량을 산출합니다.

국과장 표준활동량 산출방안 - (1안)소속직원 활동량 비율

1안 소속직원 활동량 기준 국과장 표준활동량

1단계 관내국장 및 영업과장 활동량 산출

1 업무별 표준시간기준으로 재산출된 금융창구근무자 활동량 대체 입력

- 금융창구근무자의 현행 표준활동량을 업무별 표준시간에 근거하여 재산출한 표준활동량으로 대체 입력

이름	활동량	사업	활동
이O식	44.8%	예금사업	예금상품관리
이O식	7.8%	예금사업	우편환 관리
이O식	2.9%	예금사업	우편대체 관리
이O식	7.8%	예금사업	금융수탁상품 관리
이O식	1.0%	예금사업	당좌대월 관리
이O식	35.7%	보험사업	보험사업 공통

2 소속직원의 활동량 집계 후 비율에 따라 우/예/보 활동량 산출

소속	활동	활동량집계	활동량비율
서울송인동우체국	우편	1.00	33%
	예금	1.26	42%
	보험	0.74	25%
...	...	...	...

3 공통활동은 소속 관내국, 과별 우/예/보 활동량 비율로 배부

소속	활동	활동량집계
종로2가우체국	금융사업공통	100%

소속	활동	활동량	비율	예/보 배부
종로2가우체국	예금	8%	62%	62%
	보험	5%	38%	38%

4 직위별 마케팅활동량 반영 후 최종 표준활동량 산출

-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직위별 마케팅 활동량 반영

구분	집배/무집배	직위	마케팅활동량
4급	취급	영업과장	26%
5급	취급	총괄국장	26%
5급	취급	관내국장	27%
5급	취급	영업과장	32%
5급	미취급	관내국장	24%
6급	취급	관내국장	29%
6급	미취급	관내국장	28%
별정국	취급	관내국장	47%
별정국	미취급	관내국장	39%

- 우/예/보 매출액* 기준으로 마케팅 활동량 안분

구분	우편	예금	보험	합계
배부비율	30%	32%	38%	100%
매출액(억원)	29,100	30,313	36,327	95,740

* 우편사업수익은 우특회계 2017년 매출액 / 예금사업수익은 예특회계 2017년 매출액

* 다만, 보험사업수익의 경우 [연간 정산보험료 + 자금운용수익]으로 산출함(보장비용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수익은 수익인식과 동시에 보장의무(만기도래 시 또는 사고발생 시)가 발생함에 따라 실질상 완전하게 우체국보험의 수익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제 보험료 수익에서 순보험료수익을 제한 정산월액보험료수익만을 보험료수익으로 인식함)

2단계는 산출된 관내국장 및 영업과장의 활동량에 따라 경영지도실장 및 지원과장의 활동량을 산출하며 3단계는 산출된 국과장 및 실장의 활동량을 종합하여 총괄국장 활동량을 산출합니다.

국과장 표준활동량 산출방안 - (1안)소속직원 활동량 비율, 계속

1안 소속직원 활동량 기준 국과장 표준활동량

2단계 경영지도실장 및 지원과장 표준활동량 산출

관내국장 및 과장 활동량 집계 후 비율에 따라 우/예/보 활동량 산출

- 총괄국 소속 관내국장 및 영업과장 활동량을 집계하여 경영지도실장 및 지원과장의 우/예/보 표준활동량을 산출

소속 관내국장 활동량

소속 영업과장 활동량

소속 경영지도실장 및
지원과장 활동량

청명	총괄국명	관서명	우편	예금	보험
강원지방우정청	강릉우체국	강릉교동우체국	62%	21%	16%
강원지방우정청	강릉우체국	강릉구산우체국	45%	32%	24%
강원지방우정청	강릉우체국	강릉노암동우체국	33%	40%	27%
강원지방우정청	강릉우체국	강릉사천우체국	46%	32%	23%
강원지방우정청	강릉우체국	강릉중앙동우체국	46%	32%	23%
...	...	...	...	...	...

집계 후 비율 산출

청명	총괄국명	관서명	우편	예금	보험
강원지방우정청	강릉우체국	경영지도실	47%	30%	23%
...	...	...	...	...	...

3단계 총괄국장 표준활동량 산출

관내국장, 과장, 경영지도실장, 지원과장 활동량
집계 후 비율에 따라 우/예/보 활동량 산출

- 총괄국 소속 관내국장, 영업과장, 경영지도실장 및 지원과장 활동량을 집계하여 총괄국장의 우/예/보 표준활동량을 산출

소속 관내국장 활동량

소속 영업과장 활동량

소속 경영지도실장 활동량

소속 지원과장 활동량

소속 총괄국장 활동량

2안으로는 표준활동량 입력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국과장 표준활동량 산출방안_2안)설문조사

2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국과장 표준활동량

금융창구근무자 표준활동량 적용

1 업무별 표준시간기준으로 재산출된 금융창구근무자 활동량 대체 입력

- 금융창구근무자의 현행 표준활동량을 업무별 표준시간에 근거하여 재산출한 표준활동량으로 대체 입력

이름	활동량	사업	활동
이O식	44.8%	예금사업	예금상품관리
이O식	7.8%	예금사업	우편환 관리
이O식	2.9%	예금사업	우편대체 관리
이O식	7.8%	예금사업	금융수탁상품 관리
이O식	1.0%	예금사업	당좌대월 관리
이O식	35.7%	보험사업	보험사업 공통

표준활동량 산출

2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우/예/보 활동량을 입력하여 최종 표준활동량을 산출

- 전체 공통근무인원을 대상으로 우편, 예금 및 보험사업 활동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평균값을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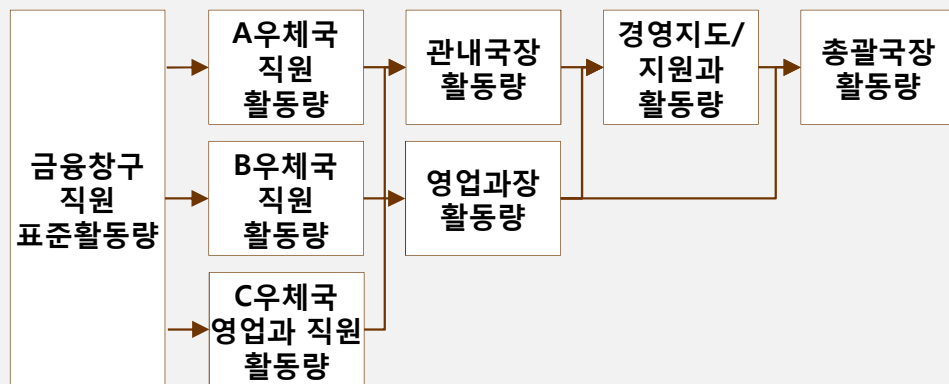
급국	집배/무집배	직위	설문결과 표본수	우편	예금	보험
4급	집배	국장	117	47%	28%	26%
		영업과장	122	38%	33%	29%
		지원과장(물류)	85	43%	30%	27%
		경영지도실장	118	34%	36%	30%
5급	집배	국장	113	50%	29%	21%
		영업과장	89	38%	33%	29%
		경영지도실장	69	36%	36%	29%
	무집배	국장	23	51%	29%	19%
6급	집배	국장	173	49%	31%	20%
	무집배	국장	864	50%	30%	20%
별정국	집배	별정국장	69	45%	34%	21%
	무집배	별정국장	443	47%	31%	23%

3안으로는 소속직원의 활동량을 기준으로 산출된 평균활동량과 사업별로 동일한 33%의 활동량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표준활동량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과장 표준활동량 산출방안_3안) 소속직원 및 사업별 동일 활동량 기준

3안 소속직원 및 사업별 동일 활동량 기준 표준활동량

1 4급(집배)~별정국(무집배)의 소속직원 활동량 비율로 관내국장, 영업과장, 경영지도실, 지원과 및 총괄국장 활동량을 단계적으로 산출함



1 4급(집배)~별정국(무집배)의 각 직위별 마케팅 활동량을 매출액기준으로 우편, 예금 및 보험사업에 반영함

1 우편, 예금 및 보험사업의 각각 동일한 활동량 비율 33%를 적용함

개요	사업별 활동량에 관계없이 필수불가결한 공통근무인원에 대해 사업별로 동일한 33% 활동량을 적용함										
적용 비율	<table border="1"> <tr> <th>활동량</th><th>우편사업</th><th>예금사업</th><th>보험사업</th></tr> <tr> <td></td><td>34%</td><td>33%</td><td>33%</td></tr> </table>	활동량	우편사업	예금사업	보험사업		34%	33%	33%		
활동량	우편사업	예금사업	보험사업								
	34%	33%	33%								
적용 비율	우체국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통근무인원의 경우 사업별 활동량에 관계없이 필수불가결한 인원으로 모든 사업에 동일한 표준활동량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고에 기초함										

50% 반영

국과장 표준활동량 도출

50% 반영

금융창구근무자 및 공통근무자의 표준활동량 산출 주기는 월별, 1년 단위, 3년 단위로 적용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원가배부를 위해 3년 단위 산출을 추천합니다.

표준활동량 산출 및 적용 방안

	1안 월별 산출	2안 년 단위 산출	3안 3년 단위 산출
개요	금융창구직원, 공통근무자의 표준활동량을 매월 산출하고 당월 적용	금융창구직원, 공통근무자의 표준활동량을 매년 산출하고 다음 년도에 적용	금융창구직원, 공통근무자의 표준활동량을 3년 단위로 산출하고 다음 주기때까지 적용
장점	- 경영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원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이론상 가장 적합한 방법	- 월별 산출보다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증가 3년 단위 보다 경영환경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음	- 현재 표준활동량 운영과 유사 - 표준활동량이 3년간 확정되므로 비용 배분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증가 - 측정 비용이 1, 2안에 비해 적음(별도의 시스템 구축 불필요)
단점	- 월별 산출 및 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등 관리 및 운영에 많은 자원(비용 등) 필요 - 표준활동량 비율의 비경상적인 변동시 대응이 어려움(경영리스크 발생)	- 년 단위 산출을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다음연도 적용할 표준활동량이 산출되기 전인 1~2월에는 전년도 표준활동량을 적용하는 등 불확실성 존재	- 경영환경 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 3년 주기로 산출되기 때문에 순환보직 특성 고려시 과거 산출 근거에 대한 관리가 필요

공통인원 2,762명을 대상으로 활동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97.1%의 응답자가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공통인원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 개요

- 설문기간: 2018.06.14 (목) – 2018.06.15 (금) (7/2~7/5 추가 회수)
- 설문대상: 우체국장, 영업과장, 우편·금융영업실장, 경영지도실장, 지원과장(지원과가 없는 경우 우편물류과장)
- 참여방법: 행정포털 및 엑셀(추가회수)

	대상자	회수	회수율	표본수	설문 내용
총괄국장	211명	204명	96.7%	198명	✓ <u>우편·예금·보험의 활동량 비중</u> ✓ 대내마케팅 수행 여부 및 활동량 ✓ 대외마케팅 수행 여부 및 활동량 ✓ 우편창구근무자의 금융마케팅 활동 ✓ 금융창구근무자의 우편마케팅 활동
관내국장	1,732명	1,663명	96.5%	1,604명	
영업과장, 우편영업실장, 금융영업실장	428명	426명	99.5%	419명	
지원과장(우편물류과장)	187명	187명	100%	175명	
경영지도실장	204명	201명	98.5%	187명	
합계	2,762명	2,681명	97.1%	2,583명	

*1. 표본수는 회수답변 중 활동량 합계가 100%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수를 의미

*2. 신뢰구간은 99.96%를 적용하였고, 우편의 상한과 보험의 하한 구간은 99%의 신뢰구간을 적용함

관내국장은 평균적으로 우편 49%, 예금 30%, 보험 21%의 활동량을 수행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른 우편·예금·보험 활동량 비율 (관내국장)

5급국 국장									
5급국 (집배국) 국장		우편	예금	보험	5급국 (무집배국) 국장		우편	예금	보험
	평균	49.26	29.14	21.60		평균	51.10	29.43	19.47
	표준편차	15.41	11.30	8.87		표준편차	17.42	11.97	10.61
	표본수	32	32	32		표본수	23	23	23
	신뢰구간	39.75~53.74	22.17~36.11	19.02~27.07		신뢰구간	38.42~57.07	20.72~38.14	15.83~27.19
6급국 국장									
6급국 (집배국) 국장		우편	예금	보험	6급국 (무집배국) 국장		우편	예금	보험
	평균	49.17	30.53	20.30		평균	49.61	30.13	20.26
	표준편차	11.81	8.40	8.22		표준편차	15.24	9.96	9.26
	표본수	173	173	173		표본수	864	864	864
	신뢰구간	46.04~50.65	28.30~32.76	19.27~22.48		신뢰구간	47.80~50.46	28.95~31.31	19.75~21.36
별정국 국장									
별정국 (집배국) 국장		우편	예금	보험	별정국 (무집배국) 국장		우편	예금	보험
	평균	44.96	33.67	21.37		평균	46.74	30.52	22.74
	표준편차	12.85	7.61	10.01		표준편차	13.26	8.59	9.81
	표본수	69	69	69		표본수	443	443	443
	신뢰구간	39.56~47.50	30.48~36.87	19.39~25.58		신뢰구간	44.54~47.78	29.10~31.95	21.97~24.36

영업과장, 우편영업실장, 금융영업실장은 평균적으로 우편 43%, 예금 24%, 보험 23%를 수행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른 우편·예금·보험 활동량 비율 (영업과장, 우편영업실장, 금융영업실장)

영업과장									
4급국 영업과장		우편	예금	보험	5급국 영업과장		우편	예금	보험
	평균	38.18	32.68	29.14		평균	37.80	33.17	29.03
	표준편차	9.41	5.99	6.70		표준편차	9.76	6.56	7.34
	표본수	122	122	122		표본수	89	89	89
	신뢰구간	35.21 ~ 39.05	30.78 ~ 34.57	28.14 ~ 31.26		신뢰구간	34.19 ~ 39.50	30.74 ~ 35.59	27.76 ~ 31.75
우편영업실장					금융영업실장				
4급국 우편영업 실장		우편	예금	보험	4급국 금융영업 실장		우편	예금	보험
	평균	91.79	4.52	3.69		평균	5.89	64.41	29.70
	표준편차	14.24	8.24	6.36		표준편차	16.10	18.04	14.89
	표본수	100	100	100		표본수	106	106	106
	신뢰구간	86.82 ~ 94.13	1.64 ~ 7.39	2.65 ~ 5.91		신뢰구간	0.43 ~ 8.46	58.30 ~ 70.53	27.32 ~ 34.75
5급국 우편영업 실장		우편	예금	보험					
	평균	70.00	14.50	15.50					
	표준편차	42.43	20.51	21.92					
	표본수	2	2	2					
	신뢰구간	-	-	-					

총괄국장, 지원과장, 우편물류과장, 경영지도실장은 평균적으로 우편 47%, 예금 28%, 보험 25%를 수행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른 우편·예금·보험 활동량 비율 (총괄국장, 우편물류과장, 경영지도실장)

총괄국장									
4급국 총괄국장		우편	예금	보험	5급국 총괄국장		우편	예금	보험
	평균	46.57	27.60	25.83		평균	45.26	29.14	25.60
	표준편차	9.87	5.94	7.00		표준편차	8.81	5.46	6.78
	표본수	117	117	117		표본수	81	81	81
	신뢰구간	43.38 ~48.07	25.68~29.52	24.77~28.09		신뢰구간	41.85~46.87	27.02~31.25	24.36~28.23
우편물류과장									
4급국 우편물류 과장		우편	예금	보험	5급국 우편물류 과장		우편	예금	보험
	평균	80.55	11.26	8.19		평균	73.52	12.40	14.08
	표준편차	21.26	13.88	8.61		표준편차	23.34	11.22	12.87
	표본수	21	21	21		표본수	68	68	68
	신뢰구간	64.36~88.18	0.69~21.83	5.10~14.74		신뢰구간	63.65~78.18	7.65~17.15	11.51~19.53
경영지도실장									
4급국 경영지도 실장		우편	예금	보험	5급국 경영지도 실장		우편	예금	보험
	평균	34.50	35.93	29.57		평균	35.50	35.97	28.52
	표준편차	11.10	7.69	8.25		표준편차	12.51	9.74	7.21
	표본수	118	118	118		표본수	69	69	69
	신뢰구간	30.93	33.46	28.32		신뢰구간	30.25~37.98	31.88~40.07	27.09~31.55

총괄국장, 지원과장, 우편물류과장, 경영지도실장은 평균적으로 우편 47%, 예금 28%, 보험 25%를 수행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른 우편·예금·보험 활동량 비율 (지원과장, 지원과 직원)

지원과장

4급국 지원과장		우편	예금	보험
	평균	43.10	30.04	26.86
	표준편차	14.53	10.66	9.74
	표본수	85	85	85
	신뢰구간	37.60~45.69	26.00~34.08	25.13~30.55

5급국 지원과장		우편	예금	보험
	평균	70.00	22.00	8.00
	표준편차	-	-	-
	표본수	1	1	1
	신뢰구간	-	-	-

지원과 직원

4급국 지원과장		우편	예금	보험
	평균	50.10	25.20	24.70
	표준편차	-	-	-
	표본수	1	1	1
	신뢰구간	-	-	-

공통인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국과장 등의 공통인원은 평균적으로 월별 활동량의 31%정도를 마케팅 활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통인원 설문결과_마케팅 활동량 비중

구분	집배/무집배	직위	마케팅 활동량 비중
4급국	집배	총괄국장	28%
		영업과장	26%
		지원과장	22%
		경영지도실장	18%
5급국	집배	총괄국장	26%
		관내국장	27%
		영업과장	32%
		지원과장(물류과장)	20%
		경영지도실장	21%
	무집배	국장	24%
6급국	집배	국장	29%
	무집배	국장	28%
별정국	집배	국장	47%
	무집배	국장	39%
4급국	집배	금융영업실장	43%
		우편영업실장	37%
		우편물류과장 (지원과가 없는 총괄국)	22%
5급국		우편영업실장	26%

설문결과 요약

- 관내국장은 평균적으로 월별 활동량 중 32.03%를 마케팅 활동에 할애하고 있다고 응답함
- 영업과장, 우편영업실장, 금융영업실장은 평균적으로 월별 활동량 중 35.03%를 마케팅 활동에 할애하고 있다고 응답함
- 총괄국장, 지원과장(지원과가 없는 경우 우편물류과장), 경영지도실장은 평균적으로 월별 활동량 중 24.19%를 마케팅 활동에 할애하고 있다고 응답함

Contents

I. 프로젝트 개요

II. 표준활동량 개선방안

III. 기타전출입금 개선방안

공통자산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의 2.5%를 적용하고 있으나 임대 대상 및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임대료를 설정이 필요합니다.

시설사용료 현황

개요	· 보특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없어 우특 및 예특의 보험전용공간(보험FC실 등)을 사용하고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있음 · 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를 근거로 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시행령
산식	시설사용료 = 공시지가 X 2.5%	
최근 3개년 시설사용료 지급현황		
'83.7월 이전 취득토지 사용료	예특 91억('17) / 84억('16) / 81억('15) 우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중략)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 (후략)
시설사용료	보특 58억('17) / 58억('16) / 77억('15) 예특	
보험전용 공간사용료	보특 20억('17) / 19억('16) / 17억('15) 우특 5억('17) / 5억('16) / 4억('15) 예특	
		✓ 현재 예금 및 보험사업은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최소임대율 2.5% 적용

시설사용료 추세 분석 결과 공시지가의 상승이 시설사용료의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임대료율 인상을 통한 시설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시설사용료 추세

시설사용료 vs 공시지가

- 시설사용료는 공시지가에 임대료율을 기준으로 부과
- 이에 공시지가와 시설사용료 증가 추세 비교

시설사용료 변화

(단위 :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연간 성장율 (3년)
합계	179	166	174	-1.4%
예금사업특별회계	81	84	91	6.0%
보험사업특별회계	98	82	83	-8.0%

✓ 최근 3년간 시설사용료는 전체 1.4% 감소, 예금사업은 6% 증가, 보험사업은 8% 감소함

우본 토지의 공시지가 변화

(단위 : 억원)

	2015	2016	2017	연간 증가율 (3년)
우본 토지 공시지가	40,847	47,452	50,256	10.9%
우본 토지 면적	3,807,230	3,822,566	3,809,130	
우본 면적당 공시지가	1.1	1.2	1.3	10.9%

✓ 우정사업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는 10.9% 상승

공시지가 추세와 시설사용료로 추세가 상반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공시지가가 상승하더라도 현 시설사용료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임대료율 2.5% 인상을 통한 시설사용료 현실화 필요

예금과 보험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증가추세이나 시설사용료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타기관의 경우 공공목적의 시설에 대해서 2.5%보다 높은 임대료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율 적용 방안

예금/보험의 손익과 시설사용료 비교

- 예금사업의 매출대비 시설사용료 비중은 **연평균 3% 감소**
-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16.2% 증가**

(단위 : 억원)

	2015	2016	2017	cagr
매출대비 시설사용료	0.3%	0.4%	0.3%	-3.0%
예특 매출액	25,411	23,984	30,313	9.2%
예특 당기순이익	1,526	1,502	2,059	16.2%
시설사용료	81	84	91	6.0%

- 보험사업의 매출대비 시설사용료 비중은 **연평균 12.6% 감소**
-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30.6% 증가**

(단위 : 억원)

	2015	2016	2017	cagr
매출대비 시설사용료	0.1%	0.1%	0.1%	-12.6%
보험 매출액	84,813	87,025	94,045	5.3%
보험 당기순이익	2,210	3,329	3,767	30.6%
보험 시설사용료	98	82	83	-8.0%

✓ 예금과 보험의 매출,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매출대비 시설사용료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인상시 부담 가능할 것으로 판단

타기관 사례

01 타기관의 시설사용료 부과 사례

서울시청의 경우 수익사업목적과 공공성격의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임대료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업무목적의 임대에도 5%의 임대료율 부과

서울시(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을 농협은행에 사용허가	5%
서울시(정부서울청사)	토지 일부를 서울전력관리처(한국전력공사)에 사용허가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건물 일부를 광양항 업무지원시설(마린센터) 사무실에 사용허가	5%

02 우체국보험회관의 임대료 부과 사례

보험사업(적립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체국보험회관의 경우 행정목적에 구분하지 않고 동일 임대료율 부과

✓ 타기관의 경우 행정, 사무시설에 2.5%보다 높은 임대료율 적용

향후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의 당기순이익 성장율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임대료율 인상하고, 타행정목적 자산에 대해서도 임대료율을 인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료율 적용 방안

임대료율단계적 인상 방안

현 2.5%에서 국유재산법 일반원칙인 5%까지 단계적 인상 고려

- **현재 시설사용료 기준 적용시, 임대료율 1% 증가시 시설사용료 59.6억원 증가**

- 83.7월 이전토지 1% 당 증가액 : 36.4억원
- 시설사용료(보험→예금) 1%당 증가액 : 23.2원

- **예금과 보험의 당기순이익 1% 증가시 금액은 58억원 증가('17년 기준)**

- 예금 당기순이익 1% 증가시 금액효과 21억원 증가
- 보험 당기순이익 1% 증가시 금액효과 38억원 증가

→ **현재 임대료율 1% 증가시 시설사용료 증가금액과 당기순이익 1% 증가시 금액효과가 유사함**

따라서 당기순이익 증가율을 고려하여 2~3년에 0.5%~1% 수준으로 인상

✓ 동일한 행정목적에서 예금과 보험만 임대료율을 인상할 경우,
타기관 형평성 문제와 예금과 보험에서 우편으로의 불공정 지원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향후 행정목적 임대료에 대해서도 5%로 인상 방안 검토 필요

국유재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우체국보험회관의 경우 행정목적 시설에도 동일한 임대료율 부과

- 근거 : 우편의 적자, 예금과 보험도 행정목적임에도 2.5% 이상 임대료율 부과

현 공통자산과 관련 비용의 배부기준은 총괄국 활동량 기준으로 우편, 예금으로 배부되고 있어 관내국 자산의 배부비율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공통자산의 배부기준 검토

현행 공통자산 배부기준



자산배분 비율 산출 단위는 총괄국 단위로 적용함에 따라 관내국 공통자산 배부비율의 왜곡 발생

현재 보험취급수수료는 우편, 예금 활동량이 100% 인 인원에 대해서만 산정되고 있어 공정성 및 일관성 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보험취급수수료

개요	우편/예금사업 소속직원이 보험모집 업무 지원 시 사업간 내부거래로 보아 보험사업에서 공정한 대가를 지급
산정 기준	FC모집경비 기준 산정: 보험사업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우편/예금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경비를 차감한 차액을 지급
대상인원	개인별 업무 활동량이 우편/예금사업에 100% 책정된 직원
최근 3개년 보험취급수수료 지급현황	
보특 8억('17) / 7억('16) / 5억('15) 우특	
보특 0.2억('17) / 0.3억('16) / 0.2억('15) 예특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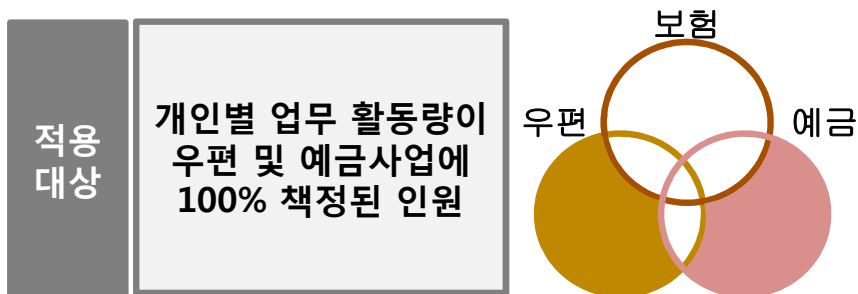
우편 100% 예금 100%

현행이슈

공평성 위험	실제 활동량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 활동량이 0.1인 인원과 0.9인 인원을 동일하게 취급함
적용기준의 일관성 결여	동일 인원에 대해서 부서 이동 또는 업무 변경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됨
표준활동량 도입에 따른 문제	표준활동량 적용에 따라 기존에 보험취급수수료 대상이었던 인원이 제외될 수 있음

이에 우편, 예금, 보험 활동량이 혼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도 보험취급수수료 산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보험취급수수료 산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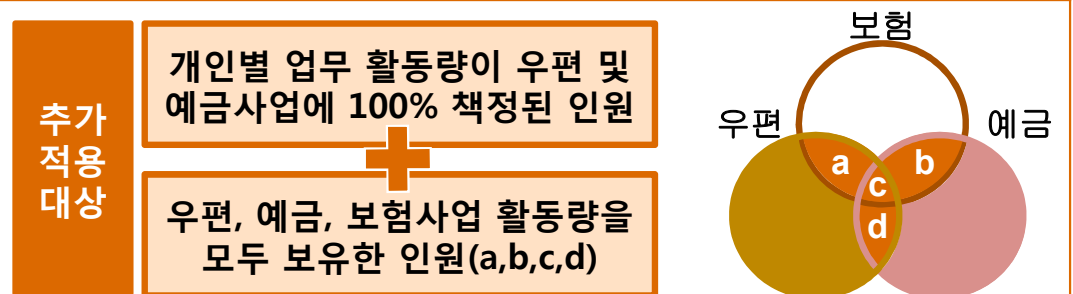
개인의 활동량

우편	예금	보험
		보험모집

“보험모집 활동이 100% 보험활동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관점”

보험활동량이 존재하는 경우 활동량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에서 제외되어 우편, 예금 활동량이 각각 100%인 인원만 보험취급수수료 부과

보험취급수수료 산정 개선안



개인의 활동량

우편	예금	보험
		보험모집

“보험모집 활동이 활동량 비율에 따라 발생했다고 보는 관점”

1안) 전체 적용

우편, 예금활동량이 각각 100% 인원과
우편, 예금, 보험 활동량이 혼재되어 있는 인원(a,b,c,d)에 대해서 보험취급수수료 부과

2안) 금융창구 근무자 제외

우편, 예금활동량이 각각 100% 인원과
금융창구근무자를 제외한 우편, 예금, 보험 활동량이 혼재되어 있는 인원(a,b,c,d)에 대해서 보험취급수수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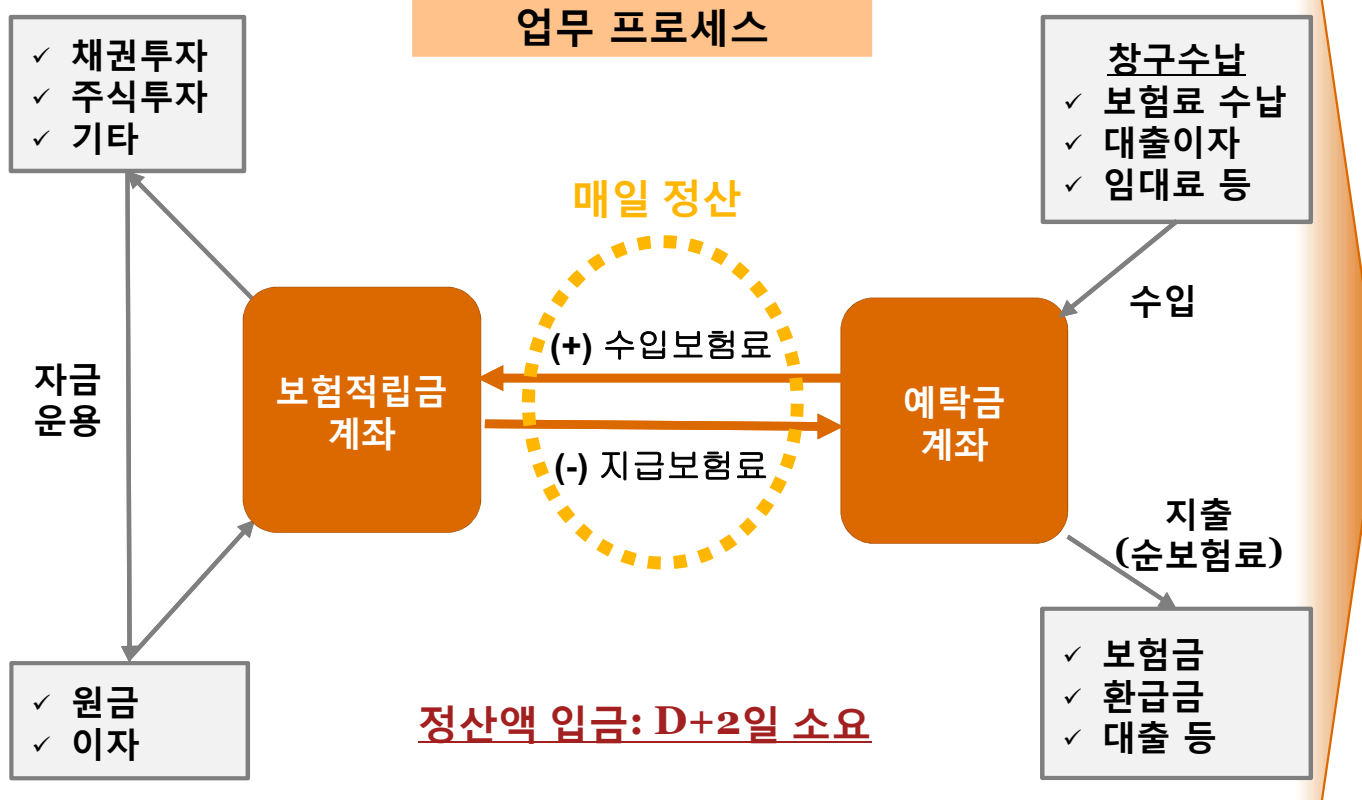
적립금에서 예탁금 계좌를 통한 보험료 거래 중 자금부족시 예특의 자금 사용분에 대하여 수수료 및 금융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탁금-보험적립금 자금결제

개요

- 우체국 창구에서 수납·지출된 보험료는 한국은행의 예탁금계좌에서 입·출금
- 입출금 금액 정산 후 부족시 적립금 계좌에서 예탁금 계좌로, 초과시 예탁금계좌에서 적립금 계좌로 자금 이체
- 예탁금 계좌의 정산은 매일 수행하나 실 자금 유출입은 정산 후 2일 소요

업무 프로세스



Issue

적립금 일일 정산 후 부족 자금에 대하여 예탁금의 자금을 2일 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수수료 및 금융비용을 부과하고 있지 않음

01 자금부족

일별 지급보험료 > 수입보험료

- ✓ 예탁금 자금을 보특에 대여하지 않고, 인출하여 운용한다면 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예특에 기회비용이 발생함
- ✓ 보특은 예탁금 계좌 자금을 이틀 간 사용한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함

02 자금초과

일별 수입보험료 > 지급보험료

- ✓ 예탁금 계좌의 자금을 인출하여 여유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어, 초과자금에 대해 운용수익 발생

예탁금 계좌의 부족자금과 초과자금을 모두 고려할 경우 이자비용의 전출입금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자비용 부과에 따른 전출입금 영향 분석

“ 적립금의 부족자금에 대하여 2일 간의 금융비용을 부과 ”

$$\text{이자비용} = \text{부족자금} \times \text{이자율} \times 2/365$$

재무적 효과_추정액

회계연도	부족자금	초과자금	순계 (단위 : 억원)
2015	85,465	89,289	-3,824
2016	82,652	87,565	-4,913
2017	75,361	86,462	-11,101
합계	243,478	263,316	-19,838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자율 : 1.5%)

회계연도	부족자금 이자비용 (보험→예금)	초과자금 이자비용 (예금→보험)	순액
2015	7.0	7.3	-0.3
2016	6.8	7.2	-0.4
2017	6.2	7.1	-0.9
합계	20.0	21.6	-1.6

분석결과,

부족자금과 초과자금의
이자비용을 모두 고려할 경우
전출입금 영향은 1억원
미만으로 전출입금 부과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우편사업 결손금 보전 목적의 전출입금을 2017년부터 예금사업 전출입금에 반영하기 시작하였으며, 보험사업에서는 제약사항으로 인해 전출입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전출입금_보특회계 결손금 보전

개요

- 우편사업은 '11년 부터 매년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 중이며, 향후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우정사업본부에서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의 영위 목적이 우편·예금·보험의 보편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보전을 통한 재정자립 기반 구축함에 있음
- 이에 우편사업의 결손보전 방안 검토 결과 예금사업에서 2017년부터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전출입금 반영 ('17년 결손금 보전 전출입금 1,002억원 반영)

제약 사항

- 보험사업의 계정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보험적립금**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며, 보험사업에서 전출입금 반영을 위해서는 예금사업과는 달리 제약사항 존재

제약1 _자산성격

- **보험적립금**은 **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등을 위한 관련규정에 따른 제한**
 - 보특법 제8조 및 회계지침 제16조(적립금 이익잉여금은 보험 결손보전, 계약자배당, 공익재원으로 사용)
 - 보특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보험적립금으로 이입하여 운용됨으로 국가자산이 아닌 보험계약자 자산 성격으로 매년 보험사업 이익금에 대해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배당제도 실시

제약2 _전출입 제한

- **보특회계**는 **관련법령과 자원성격에 따라 우특회계로 전출 제한**
 - 국가재정법 제13조(보특 회계전출 불가), 우정사업특례법 제14조의2(결손보전 보특제외)
 - 예금특별회계와는 달리 보특회계는 국가재정법상 회계간 전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보험사업에서 우편사업으로 결손금 보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 선행 필요

보험사업특별회계의 결손보전 목적의 회계간 전출입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과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레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개정_국가재정법 및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레법

As-Is

<국가재정법 13조>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레법 14조의 2 (이익 및 손실의 처분) >

①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To-Be

<국가재정법 13조>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삭제)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레법 14조의 2 (이익 및 손실의 처분) >

①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신설)**는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의 적자 규모 증가, 투자재원 부족에 대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특별법상 운용조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체국보험 대출

개요

- 우편사업은 '11년 부터 매년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 중이며, 향후 규모가 확대되어
- 우체국 신설 등의 투자와 운영자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하여 검토
- 우정사업본부가 전출입금을 제외한 자금 조달 방안으로는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차입에 의한 자금 조달이 가능함
- 자금 조달 결정과정이 복잡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정부 조달 대신 우정사업본부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보험사업에서의 차입에 의한 자금 조달에 대하여 검토

우체국 보험 특별 회계 법상 대출 가능성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1항]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 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8. 재정자금에의 예탁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의 대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상 적립금 운용 목적에 따르면 우특회계로의 대출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보험사업으로부터의 대출은 운용자금 목적, 시설투자 목적으로 구분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특혜 및 불공정 시비에 대비하여 공정한 이자율 등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차입조건 검토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 자금 차입 목적으로 경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 차입 목적과 시설, 설비 등의 투자목적으로 구분 가능 - 운영자금 차입 : 일반적인 우편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기계, 관리운영비, - 시설투자 차입 : 우체국, 물류센터, 대규모 물류설비 등 주로 대규모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투자
이자율	• 보험사업에서 우편사업으로의 대출은 특수관계자 거래 또는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으며, • 우편사업이 보편적·경쟁적 서비스가 혼재된 상황에서 우편사업 보전 시 FTA 등 국제협약에서 교차보조에 따른 불공정 시비 우려 → 따라서 대출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대출이자율은 적립금회계의 적정이자율 적용 필요 [적용 가능 이자율] - 유사 조건의 대출을 민간에서 차입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 적립금회계가 유사한 조건(신용도, 대출기간 등)으로 대출할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 - 적립금회계의 여유자금 운용 평균수익률
대출기한	• 일반적으로 대출기한은 차입 목적에 따라 구분 - 운영자금 차입 : 1~3년 내의 단기 차입 - 시설투자 차입 : 시설투자 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장기 차입
기타 고려사항	• (예산편성) 보험사업에서의 대출은 적립금회계로부터의 대출로 별도의 예산편성이 아닌 적립금회계의 여유자금운용의 일부분으로 별도 예산편성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결손금 보전) 적립금회계로부터 차입 후 이자비용 지급시, 우편사업의 결손금 보전 등 전출금 산정시 주의 필요 - 보험사업으로 결손금 보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자비용으로 인한 이익 감소가 결손금에 반영되어 보험사업특별회계로부터 전출입금을 증가시키게 됨 - 따라서 이자비용으로 인한 결손효과는 제외 필요

감사합니다.